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단체협약 개정 주요내용

(2025.5.21)

■ 개정 사유

-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중장기적 지향점 명시
- 육아시간 확대 및 휴가나눔제 도입
- 기존 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
 - 기존 협약 유효기간 : 체결일('23.2.10)로부터 2년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가.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광고영업 개념 확장

• (기존) 방송광고영업의 주체로서 → (변경) 광고영업의 주체로서 <전문 개정><제21조① 개정>

나. 육아시간 확대 및 휴가나눔제 도입

- (출산양육지원)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 <제33조③항 개정>
- (휴가의 나눔) ① 공사는 조합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휴가 나눔제를 실시한다. ② 휴가 나눔제에 있어 기부할 수 있는 휴가는 저축휴가 및 보상휴가로 한다. ③ 공사는 휴가 나눔제 시행에 있어 기부자 및 기부내용에 관해서는 공표하지 않는다. ④ 휴가 나눔제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제43조의2 ①항~④항 신설>